

용인특례시장 ↔ (재)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간

성 과 계 약 서 (안)

2025. 2. 14. ~ 2025. 12. 31.

교육문화체육관광국
교 육 청 소 년 과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계약의 목적) 이 계약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(재)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(이하 “대표이사”라 한다)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, 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대표이사 간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(재)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계약의 체결) ① 시장과 대표이사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, 이 계약서에 각각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.

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3 조(계약기간)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사임, 해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할 때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4 조(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)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최고경영자로서 재단을 대표 하며 제반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「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, 재단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대표이사는 법, 조례,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

수행할 의무를 지며,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5조(임기 중 겸직 제한 등) ① 대표이사는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대표이사는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지득한 재단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기밀을 이용하여 재단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.

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
제6조(의원면직 제한) 시장은 대표이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,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

제 7 조(경영목표) ① 대표이사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별표 1과 같다.

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제 8 조(경영실적 보고) 대표이사는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성과평가) ① 대표이사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(이하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는 시장이 행하며, 성과평가는 매년 6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 기준을 정하여 전년도

12월까지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되는 평가등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 10 조(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) ① 대표이사의 성과평가는 다음 연도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「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」에 따른다.

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재임한 경우 성과급은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, 그 기준은 재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.

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

제 11 조(보수체계) 대표이사의 보수는 기본연봉, 성과급, 부가급여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2 조(기본연봉 및 부가급여) ① 대표이사의 임기 중 기본 연봉액은 금78,051,000원(11개월 기준)으로 하며 매월 11분의 1씩 재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② 부가급여는 보수 규정을 준용하되, 부가급여는 금10,230,000원(11개월 기준)으로 하며 매월 11분의 1씩 재단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.

③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은 성과평가 및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 또는 삭감할 수 있으며,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④ 제3항에서 의하여 인상 또는 삭감된 기본연봉은 연봉조정이 확정된 연도부터의 기본연봉으로 적용하고, 연봉조정이 확정된 당해 보수지급부터 분할 정산한다.

⑤ 대표이사가 임기 중 해임되거나 사망, 그 밖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할 때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⑥ 대표이사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.

제 13 조(성과급) ① 대표이사의 성과급은 시장이 정하는 지급률에 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,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대표이사가 사업연도 중에 퇴임할 때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법 제9조, 제10조 또는 정관,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와 제6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을 받으면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④ 대표이사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시장은 대표이사의 성과급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(보수 지급 후의 조정) ① 대표이사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, 오류의 발견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보수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.

② 대표이사가 중도에 퇴임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추가로 지급하고,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대표이사로부터 그 금액을 반환받아야 한다.

제 15 조(퇴직금) ① 퇴직금은 대표이사가 1년 이상 근속한 때에만 지급하며, 지급금액은 재임 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.

② 퇴직금 지급의 월평균 보수 산정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, 부가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과 최종 1년간 지급된 성과급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,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.

④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6 조(복리후생 등) ① 재단에서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.

② 대표이사의 휴가, 의료, 보건관리, 그 밖의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재단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기 타

제 17 조(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)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정부 또는 시 정책,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
2.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,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
3.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·외부 감사 결과 통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18 조(계약의 해석)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과 대표이사 상호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.

제 19 조(권리의 귀속) 대표이사가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, 특허권, 등록상표, 아이디어 및 그 밖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재단에 귀속되며, 대표이사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.

제 20조(세금)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 징수한다.

제 21 조(계약서의 보관)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.

용인시장과 (재)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는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.

2025. 3. .

용인시장

이 상 일



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

대표이사 김 영 우



별표 1. 경영목표

경영목표	세부 추진사항
① 기관장 리더십·전략 강화	◇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및 경영전략 공유 강화 ◇ 사회적 책임 경영 이행 ◇ 부패방지과 청렴유지를 위한 윤리경영 로드맵 이행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
② 경영효율성 제고 및 조직역량 강화	◇ 경영환류시스템 구축 및 운영 ◇ 경영개선과제 이행·관리를 통한 지속적 경영 개선 노력
③ 정부 및 시 권장정책 이행	◇ 정부 및 시 권장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이행 ◇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및 활동 활성화
④ 기관 중장기 전략과제 성과 제고	◇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◇ 데이터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◇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확대 ◇ 청소년 참여·권리 보장강화 ◇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강화

※ 세부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별표 2.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등급 기준

평가등급	가	나	다	라	마
점 수	95점 이상	95점 미만 90점 이상	90점 미만 80점 이상	80점 미만 70점 이상	70점 미만

별표 3. 기본연봉 조정률표

평가등급	가	나	다	라	마
지급률	5% ~ 3%	2% ~ 1%	0%	-1 ~ -2%	-3 ~ -5%

별표 4. 성과급 지급률표

평가등급	가	나	다	라	마
지급률	180~121%	120 ~ 81%	80 ~ 40%	0	0

※ 예산의 범위내 지급

별표 5. 대표이사 기본연봉 및 부가급여 상세내역

[기간 : 2025 . 2. 14. ~ 2025. 12. 31.]

항 목		금 액	지급시기	산출내역
연 봉 합 계		88,281,000원		「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」 준용
소 계		78,051,000원		월 7,366,220원
기본 연봉	기 본 급	64,387,400원	매월	기본급 5,853,400원 (4급 28호봉)
	정근수당(연1회)	2,926,700원		10년 이상, 월 봉급액 50%
	정근수당 가산금	1,100,000원		20년 이상, 기준액 100,000원
	정근수당 추가가산금	330,000원		25년 이상, 기준액 30,000원
	관리업무수당	5,794,860원		기본급×9%×11월 (월 526,800원)
	명절휴가비(연1회)	3,512,040원		월 봉급액의 60%×1회
소 계		10,230,000원		월 890,000원
부가 급여	정액급식비	1,540,000원	매월	월 140,000원
	직급보조비	4,400,000원		기준액 400,000원
	직책급 업무추진비	3,850,000원		기준액 350,000원
	가족수당	440,000원		배우자 1명 (월 40,000원)

※ 2025. 2. 1. ~ 12. 31. 11개월 기준 (2월분은 일할계산 지급한다)